

■ 수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08.1.3>

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(제34조 관련)

시설규모(일)	배치기준	적용시기
50만 m^3 이상	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	2009년 1월 1일부터
10만 m^3 이상 50만 m^3 미만	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	
5만 m^3 이상 10만 m^3 미만	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	
2만 m^3 이상 5만 m^3 미만	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	2009년 7월 1일부터
5천 m^3 이상 2만 m^3 미만	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	
5백 m^3 이상 5천 m^3 미만	·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	2010년 7월 1일부터